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규약

1999. 8. 13 제정

2001. 9. 26 개정

2004. 7. 23 개정

2006. 12. 15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 부설 일본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센터는 주체적이고 보편성있는 연구방법론으로 일본에 관한 제분야를 연구하여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인류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연구 프로그램 개발
2. 연구과제 위탁과 지원
3. 국내외 학문교류와 그 지원
4. 학술 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5. 전문 학술지인 연구 총서 간행
6. 일본어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7. 기타 본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직

제4조 (기구) 본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위원회
  - 가. 운영 위원회
  - 나. 특별 위원회
  - 다. 출판 위원회
  - 라. 자문 위원회
2. 연구실
  - 가. 일본 문학·문화연구실
  - 나. 일본 역사·사회연구실
  - 다. 일본 어학·교육연구실
  - 라. 일본 정치·경제연구실
  - 마. 재일코리안연구실
3. 일본학 자료실
4. 청산곽유지 장학회

제5조 (분장업무) 각 연구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문학·문화연구실은 일본의 문학과 제반 문화현상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일본 역사·사회연구실은 일본의 역사와 사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일본 어학·교육연구실은 일본의 언어와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4. 일본 정치·경제연구실은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5. 재일코리안연구실은 일본 재일코리안(재일동포, 일본거주 재외국민 포함)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제6조 (임원) 본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연구실장 5명
4. 일본학 자료실장 1명

- 5. 총무위원 1명
- 6. 연구위원 1명
- 7. 출판위원 1명
- 8. 감사 1명

제7조 (소장) ① 소장은 본교 일어일문학과 전임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8조 (부소장) ①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본 연구센터를 대표한다.

제9조 (연구실장 및 위원) ① 연구실장은 해당 연구실의 제반 행정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일본학 자료실장은 일본학 자료실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총무 위원은 회계 업무를 포함한 연구소의 제반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구 위원은 사업기획, 대외기관 및 인사에 대한 교섭업무와 홍보업무, 그리고 각 연구실의 연구업무를 조정 감독하고 학술 발표회를 주관한다.

⑤ 출판위원은 학술지 및 일체의 간행물에 대한 편집·출판업무를 담당한다.

⑥ 각 실장 및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본 연구소의 신입 운영위원의 임명은 운영위원 전체의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청산곽유지 장학회) ① 본 연구센터에 청산곽유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청산 곽유지 장학회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청산곽유지 장학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교 대외협력처 및 학생처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11조 (감사) ① 감사는 본 연구센터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 회계와 정산 내역을 소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연구교수 및 연구원) 본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본 연구센터에서 외부 학술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대학의 연구교원 위촉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연구실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2.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4. 객원연구원은 본 대학 또는 타 대학 및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이나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본 연구센터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5. 연구보조원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부생, 석사학위 과정 학생들을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6.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소장은 본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총무위원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장 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일본학 자료실장, 각 연구실장 및 총무위원, 연구위원, 출판위원으로 구성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회의는 매학기초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운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결과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센터의 제규정의 제정 및 철폐
4.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각 연구실 단위를 넘는 학술활동을 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성립된다.

② 특별위원회는 소장, 관련 연구실장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가장 적절한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제16조 (출판위원회) ① 출판위원회는 소장, 각 연구실장, 출판위원으로 구성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② 출판위원회는 연구센터의 모든 간행물에 관한 편집·출판 업무를 협의하고 관리한다.

제17조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명예교수 및 본 연구센터 연구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하는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본 연구센터의 전반적인 연구방향과 섭외업무에 관해 자문한다.

## 제4장 재정

제18조 (경비) 본 연구센터의 경비는 기금, 사업보조금, 연구개발비, 학술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연도) 본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예산과 결산) 소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해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 사업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 감사) 본 연구센터의 수입·지출은 연 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

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재산의 귀속) 본 연구센터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 제5장 규약개정 및 준용

제23조 (규약개정 등) 본 연구센터의 규약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연구센터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준용) 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및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日本研究』 投稿規定

## 가. 투고요령

1. 내용 :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문화, 일본어교육 등 일본학 관련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 : 원고투고는 <훈글>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한다.
3. 투고원고 제출처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65번지 청산·MK문화관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E-mail : kujc@korea.ac.kr  
전화번호 : 02) 3290-2592(일본학연구센터)
4. 투고마감일 :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
5. 게재 및 수정 : 원고의 게재여부는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수정에 관한 사항은 심사규정에 상술.)
6. 교정 : 게재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7. 별쇄본 : 게재가 결정된 필자에게는 본 연구지 1부를 증정한다.(별쇄본은 필자의 신청을 받아 제작하며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8. 저작권 :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센터가 소유한다.
9. 사이버출판 : 게재된 모든 논문은 일본학연구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출판한다.

## 나. 투고논문 작성요령

1. 편집용지 : <B5용지> 위15, 머리말13, 왼쪽17, 오른쪽15, 아래20, 꼬리말0, 제본7.

2. 원고분량 : 작성요령에 준하여 편집한 상태로 요지, 참고문헌 등을 포함해 16~19매로 한다. 20매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한다.
3. 사용언어 :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논문 에 한해서는 필자 본인에 의해 구사된 한국어 및 일본어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4. 원고작성 : 논문제목 - 신명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필자명 - 신명조 11, 줄간격 140, 오른쪽 정렬.  
E-mail address - 신명조 8, 줄간격 100.  
요지 - 신명조 또는 신명조약자 8, 줄간격 140.  
(요지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며, 분량은 논문 1면의 1/2쪽 이내로 한다)  
주제어 - 신명조 8, 진하게.  
(요지문과 동일한 언어로 4~6단어를 제시한다.)  
큰제목 - 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70.  
본문 - 신명조 10, 줄간격 170.  
인용문 - 신명조 9, 줄간격 170, 문단모양: 왼쪽 6ch, 들여쓰기 안함.  
각주 - 신명조 9,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 혼합.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 또는 참고한 쪽수를 명기 한다.)  
참고문헌 - 신명조 8, 줄간격 140.

기타 참고문헌 작성요령 및 간격의 설정 등 자세한 사항은 <『日本研究』論文作成要領>을 참고한다.



# 『日本研究』 論文作成要領

〈논문제목〉 **일본어 교육의 방향**(신명조 15, 진하게, 가운데정렬.)

**\*\*2줄\*\***

〈필자명〉 김철수(신명조 11, 줄간격 140.)

〈E-mail address〉 abc@mail.com (신명조 8, 줄간격 100.)

〈요지〉 작성언어: 영어(권장) 또는 일본어.

분량: 논문 1면의 1/2쪽 이내.

글자크기: 신명조 또는 신명조약자 8, 줄간격 140.

〈주제어〉 주제어는 요지문과 동일한 언어로 4~6단어를 제시한다.(신명조 8, 진하게.)

**\*\*2줄\*\***

〈큰제목〉 **1. 연구목적 및 방법**(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70.)

**\*\*1줄\*\***

〈본 문〉 이 논문은.....(신명조 10, 줄간격 170.)

**\*\*1줄\*\***

**2. 한국의 일본어 교육의 실태**

**\*\*1줄\*\*** (작은 제목과 본문 사이는 띄지 않음.)

〈인용문〉 원문의 인용은 행을 새로 하여 상하를 한 칸 띄운 뒤 ‘문단설정’을 한다.

(글자모양: 신명조 9, 줄간격 170, 문단모양: 왼쪽 6ch, 들여쓰기 안함.)

〈각 주〉 신명조 9,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 혼합.

\* 각주의 인용 및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발행년도와 쪽수 등을 명기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제목은 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40.

참고문헌 내용은 신명조 8, 줄간격 140.

\* 필자명을 기준으로 국문, 일문, 영문 순으로 각각 가나다, 오십음,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 필자명(연도), 논문 또는 단행본명, 게재권호, 발행처, 쪽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 『日本研究』 審査規定

## 제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제2조 (투고 논문)

투고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으로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 (논문의 내용)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문화, 일본어교육 등 일본학 관련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제4조 (논문의 체제)

투고 규정에 제시한 “투고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 (논문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판정소견을 소정 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논문심사서와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E-mail로 송부한다.

## 제6조(논문 게재)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논

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수정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 게재를 결정한다.

3.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4. 심사위원간의 '게재'와 '수정 후 게재'로 판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위의 2의 사항을 따른다.
5. '게재 불가'가 2인 이상일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6. 심사위원간의 의견이 모두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춘미(고려대)

### 편집위원

고정도(경북대)

구건서(평택대)

구태훈(성균관대)

권혁건(동의대)

김순전(전남대)

김필동(세명대)

김환기(동국대)

남상호(경기대)

박유하(세종대)

백동선(강원대)

설근수(전북대)

손동주(부경대)

양동국(상명대)

오준영(공군사관학교)

윤강구(경상대)

이강민(한양대)

이덕배(전남대)

이성규(인하대)

임영철(중앙대)

장영철(군산대)

편무진(단국대)

허호(수원대)

## 日本研究 *Studies of Japan*

— 제8집 —

2007년 8월 28일 발행

펴낸곳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65번지 청산·MK문화관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Tel : 02)3290-2592

Fax : 02)3290-2538

Homepage : <http://www.kujc.kr>

제 작 도서출판 **보고사**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11번지

Tel : 02)922-5120~1 Fax : 02)922-6990